

2025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2,069,6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24년 수가	24년 본인 부담금		25년 수가	25년 본인 부담금 (15%기준)
30분 이상	16,630	2,495	30 분 이상	16,940	2,541
60분 이상	24,120	3,618	60 분 이상	24,580	3,687
90분 이상	32,510	4,877	90 분 이상	33,120	4,968
120분 이상	41,380	6,207	120분 이상	42,160	6,324
150분 이상	48,250	7,238	150분 이상	49,160	7,374
180분 이상	54,320	8,148	180분 이상	55,350	8,303
210분 이상	60,530	9,080	210분 이상	61,670	9,251
240분 이상	66,770	10,016	240분 이상	68,030	10,205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24년 수가	25년 수가	25년 본인 부담금 (15%기준)
방문목욕차량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86,480	12,972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77,970	11,696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48,690	7,304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감경	9%, 6%
기초생활수급자	0%

- * 1~4등급 어르신 중 병원동행 등 필요시 1일 최대 8시간으로 월 4회까지 가능
- * 1~2등급 어르신은 재가(방문)급여 또는 시설(요양원)급여 이용 가능
- * 3~5등급 어르신은 재가(방문)급여만 이용하실 수 있음(공단승인절차통해가능)
- *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불가능,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 2024년부터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